

#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『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』를 제정·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(안 제6조)

-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 예산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, 군홈페이지 인터넷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.

### 나. 의견수렴 절차(안 제7조)

-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

-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다.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(안 제8조, 제9조)

-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서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
-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라. 기타사항(안 제10조)

- 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, 협의회,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실시(2007. 3. 30 ~ 4. 19) : 제출의견 없음

## 평창군 조례 제 호

#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2.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
**제3조(법령준수의무)**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단체장의 책무)**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주민의 권리)**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**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** 군수는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

일정기간동안 군보,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**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8조(의견 제출)**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결과 공개)**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**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, 협의회,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령

## 지방재정법

제39조(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